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심제) 심사기준



2020. 01.

조달청 시설사업국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간이형 공사

- 실적제한 공사

I. 정의

- ❖ “고난도공사”란 [별표2-1]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 ❖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공사규모 난이도별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규모 공사난이도	추정가격 100억 미만	100억 ~ 200억	200억 ~ 300억	300억 이상
일반공종	적격	간이형 [별표1-5]		PQ ⇨ 중심 [별표1-1]
고난도공종* (PQ심사기준 제3조 관련)	-	-	PQ ⇨ 중심 [별표1-2]	
실적공종	적격	중심 [별표1-4]		PQ ⇨ 중심 [별표1-3]

* 터널, 항만, 교량 등 고난도 공종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포함

II.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다만,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지 않는다.

III. 입찰서 등의 제출

- ❖ 입찰서

- ❖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는 입찰이후 제출(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

- ❖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IV. 종합심사 점수산정 제외

- ❖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IV. 종합심사 점수산정 제외

- ✓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
- ✓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 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 ✓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IV. 종합심사 점수산정 제외

-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 ✓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V. 균형가격의 산정

- ✓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 ✓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 ✓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VI. 균형단가의 산정

- ❖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제외
- ❖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제외
- ❖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제외.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

VII. 기준단가의 산정

- ❖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의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 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text{세부공종기준단가} = (\text{조사내역서 세부공종단가} \times \text{예가산출률} \times 90\%) + (\text{입찰자 균형단가} \times 10\%)$$

VIII. 심사항목 및 배점

❖ 일반공사 : [별표1-1]

❖ 고난도공사 : [별표1-2]

❖ 실적제한공사 :

✓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별표1-3]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 담당공무원이 제20조 및 제22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2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 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별표1-4]

❖ 간이형공사 : [별표1-5]

IX. 낙찰자 결정

- ❖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 ✓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 ✓ 추첨

X. 심사서류의 보완

- ❖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단, 2020년 12월 1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한적으로 운영

XI.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또는 60	<p>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A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right)^2} \times \text{배점}$</p> <p>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B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right)^2} \times \text{배점}$</p> <p>-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p>

단가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단가	-4	<p>평점 = (배점) × (1 - 단가점수 × 1/100)</p> <p>- 단가점수 = $\sum(\text{세부공종별가중치}_i \times \text{세부공종별 단가점수}_i)$</p>

XI.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는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이상 ~ 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 ~ 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의 경우

XI.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 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text{평점} = (\text{배점}) \times (1 - \text{하도급점수} \times 1/100)$ - 하도급점수 = $\sum(\text{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가중치}_i \times \text{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_i)$
계약 신뢰도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XI.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 ❖ 간이형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14-1)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 계약예규 개정사항

- 1) **(PQ심사) 300억원 미만** 공사는 통상 PQ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PQ에서 평가중인 경영상태 평가를 공사수행능력에 반영
- 2) **(공사수행능력)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이종심제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 신설

	300억원 이상 (현행)	100억원 ~ 300억원 (신설안)	
배 점	40점 ~ 50점	30점 ~ 40점	
세 부 평 가 항 목	① 시공실적	완 화	
	② 배치기술자	완 화	
	③ 규모별 시공역량	O	
	④ 공동수급체 구성	O	
	⑤ 매출액 비중	X	
	⑥ 시공평가결과	X	
	⑦ 건설인력 고용	X	사회적책임에 포함
	-	경영상태 평가	PQ항목→공사수행능력 항목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 계약예규 개정사항

3) 간이형중심제 공사수행능력평가 개정안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20~30%	
		공정거래	20~30%	
		건설인력고용	20~3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 간이종심제 세부기준 개정내용

1. (PQ심사)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PQ심사 구분 적용

- 1)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및 2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만 PQ심사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2) 그 외 공사는 PQ심사를 생략하되 공사수행능력평가에 PQ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만을 반영하여 평가

2. (공사수행능력평가) 간이형 종심제 신설안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 세부기준 개정내용

- 간이형중심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가점: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경영상태

- ✓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사수행능력심사에 평가항목 신설

*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35점 만점) × 10/3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34.4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시공실적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업종별 평가

* (평가방법)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업종별 가중치 부여)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

가. 토목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1.3	$\text{시공실적점수} = 10\text{점(배점)} \times (\text{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 / (\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 ※ 단, 준설공사는 만점계수를 2.0으로 적용
배 점	10점	

나. 건축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2.0	$\text{시공실적점수} = 10\text{점(배점)} \times (\text{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 / (\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
배 점	10점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다.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 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	10점	

라. 실적제한 공사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 기준 규모 대비					
	A등급 200%이상	B등급 165%이상	C등급 130%이상	D등급 90%이상	E등급 50%이상	F등급 50%미만
300억원 미만						
배 점	10점	9.2점	8.3점	7.4점	6.5점	5.5점
평가 방법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배치기술자

-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여부 평가를 평가하되 현장대리인(5점)만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는 배점한도 적용**

* 최초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

** 단,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미만의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평가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text{평점} = [(A \times 2) / (365 \times 3 \text{년}) + B / (365 \times 3 \text{년})] \times (\text{배점})$ -A: 동일업종공사의현장대리인참여경력(근무일수) -B: 동일업종공사의기타직위참여경력(근무일수) (단,평점은배점을초과할수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안전	1	
		품질	1	
계			8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규모별 시공역량

- 동급 업체간 경쟁 강화, 영세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 중심제보다 배점 확대(3점→6점)

* (평가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보다 상위등급업체 참여시 감점 부여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1등급	6	6	6	6	6	6	6
2등급	5.9	6	6	6	6	6	6
3등급	5.8	5.9	6	6	6	6	6
4등급	5.7	5.8	5.9	6	6	6	6
5등급	5.6	5.7	5.8	5.9	6	6	6
6등급	5.5	5.6	5.7	5.8	5.9	6	6
7등급	5.4	5.5	5.6	5.7	5.8	5.9	6

☞ 실적제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 영세업체 수주지원, 중소기업체간 협업 활성화를 고려하여 기존 중심제 보다 배점 확대 (2점→6점)

* (평가방법)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6	A. 25%이상	6.000
		B. 20%이상, 25%미만	5.875
		C. 15%이상, 20%미만	5.750
		D. 10%이상, 15%미만	5.625
		E. 10%미만	5.500

XII.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사회적 책임 가점

➤ (건설인력 고용심사)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여 적용

* (평가방법)고용탄력성 점수에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 횟수)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 탄력성	0.4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0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질의응답

질의응답(전화 및 메일)

<총괄 및 입찰금액 부분>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 완 사무관 042-724-7085
김 곤 주무관 042-724-7254
(gony018@korea.kr)

<공사수행능력 부분>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 042-724-7405
이재학 주무관 042-724-7365
(rayn78@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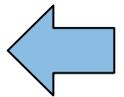


Thank Yo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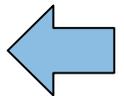
[별표 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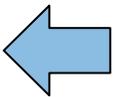
[별표 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 1-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300억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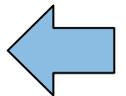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 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300억미만)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배점한도적용



[별표 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